

日本 자판기 관계법령해설(5)

주세법 및 주류자판기 설치 관련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항등에 관한 법률(초)

(소화 28년 2월 28일 제정)

(목적)

제 1조 이 법률은 주세가 국세수입 중에 있어 접하는 지위에 비취 주세의 보전 및 주류 업계의 안정을 위해 주류업자가 조합을 설립해 주류의 적절한 수급조사 등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주류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설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좀더 주세확보 및 주류의 취급 안정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의 표시에 관한 명령)

제 86조의 7 대장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표시의 기준을 정한 사항 중 주류 취급의 원활한 운영 및 소비자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표시의 적정화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진 사항 때문에 주류 제조업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해 대장성령으로써 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초) (소화 28년 3월 4일 제정)

(표시 기준)

제 8조의 4 법률 86조의 6 『주류의 표시 기준』 제 1항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다음에 포함된 사항

으로 한다.

1. 주류의 제조, 품질 기타 이것과 유사한 사항
2. 미성년자의 주류방지에 관한 사항

주류의 판매업 면허등의 취급에 관해서(초)

(소화 38년 1월 14일 제정)

(주류판매업 면허등 취급요령)

1. 자동판매기에 의해 주류소매업의 면허

(1) 면허의 요건

신청자 또는 판매장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 있는 경우로 있을 것.

① 신청자는 자동판매기의 소유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소유자 혹은 관리자 일 것. 단지 술집, 여관, 요리점등 주류를 취급하는接客업자를 제외한다.

② 설치하려고 하는 자동판매기는 형식 및 주류의 수용 능력이 밝혀져 있고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게 고정되어져 있는 것.

(주) 음주방지의 관점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 판매에 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방지의 관점에서 다음의 설치가 강구되어지게 지도할 것.

- (i) 설치하려고 하는 자동판매기에는 판매책임자를 정한다.
- (ii) 설치하려고 하는 자동판매기에는 미성년자의 음

주가 금지되어져 있는 표시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처한다.

(ii) 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기준한 음식점영업의 면허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류판매업 면허를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할 것.

③ 가온장치를 가지고 있는 자동판매기에 의해 병 또는 강통의 주류를 판매할 때.

④ 가온장치 없이 자동판매기에 의해 병 또는 강통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로 과자, 간식거리등 소위 술안주로 되는 것을 제공할 때

⑤ 술집, 요리점 등의 영업장에 자동판매기 (가온장치의 유무는 상관없이)를 설치해 병 또는 강통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기준해 음식점 영업의 면허의 요건에 상관하지 않고, 주류판매업면허를 요하는 것으로 취급할 것.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소매업 면허 취급에 관해서 (초) (소화 48년 7월 31일 제정)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소매업면허에 대해서는 소화 38년 1월 14일부 간주 2-2『주류의 판매업면허등의 취급에 관해서』통달의 별책『주류의 판매업 면허등 취급요령』의 제 3의 7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분간 면허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단지 신청이 주류 판매업 면허등 취급요령의 제 3의 7의 (1) (면허요건) 및 (3)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에게 있어 특별히 면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의 판매업 면허등 취급요령의 제1의 14의 규정에 상관없이 국세국장에 상신뿐만 아니라 그 지시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하처럼 된다.

(이유)

최근 미성년자 음주방지 및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방지의 견지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 판매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조금이라도 자동판매기

에 의한 주류소매업면허를 신규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류의 판매업면허등의 제정에 대해서 (초) (평성원년 6월 10일 제정)

제 1항 총 칙

제 2 주류판매업등 면허의 구분 및 그 의의

1 주류판매업등 면허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주류판매업면허
 - ㉠ 주류소매업면허
 - ㉡ 주류도매업면허
- (2) 주류판매대행업면허
- (3) 주류판매대개업면허

제 2항 주류소매업면허

제 1 총 칙

1 주류소매업면허의 의의

주류소매업면허란 소비자 또는 파음점영업자(술집, 요리점, 기타 주류를 전적으로 자기의 영업장에 있어 음용으로 공급하는营业을 행하는 자를 말함)에 대해 주류를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인정되어진 주류판매업면허를 말한다.

2 소매판매지역

소매판매지역이란 주류의 판매장 수와 주류의 소비주량의 지역적 수급조정을 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역단위로서 원칙적으로 세무서 관할 구역내의 각 시구정촌을 단위로해 세무서장이 설정한다. 정촌 합병등에 의해 시구정촌내에서 인구 편재가 발생해 있는 경우 등 시구정촌 것으로 소매판매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경우를 합해, 당해 시구정촌의 일부를 독립하여 소매판매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구정촌의 일부를 독립해 소매판매지역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는 국세청장관에 보고, 그 지시에 의해 처리할 것.

3 소매판매지역의 요건

(1) 동경시의 특별구 인구 30만인 이상의 시, 혹은 이것에 준하는 시구정촌(거주지 인구밀도 3,000인 / km²이상의 시구정촌을 말함) 또는 이의 일부를 소매판매지역으로 하는 경우 해당소매판매지역을 A 지역이라 한다.

(주) 『거주지인구밀도』란 시정촌 총인구를 시정촌 총 면적부터 임야면적 및 호수면적을 제한, 거주지 면적으로 정해 얻어지는 인구밀도를 말한다.

(2) A지역 이외의 시, 혹은 이것에 준하는 정촌(거주지 인구밀도 1,200인 / km²이상 3,000인 / km²미만의 정촌을 말한다) 또는 이것의 일부를 소매판매지역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소매판매지역을 B지역으로 한다.

(3) A지역 및 B지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매판매지역을 C지역이라 한다.

(4) 상기 2에 의해 시구정촌의 일부를 독립해 소매판매지역이라 하는 경우는 해당소매판매지역의 거주지 인구밀도에 기준해 각각 A지역, B지역, 또는 C지역으로 구분한다.

제 2 주류소매업면허의 종류 및 그 의의

주류소매판매업의 종류 및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주류소매업 면허

일반주류소매업면허란 판매장에 있어 원칙으로 정한 종류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주류소매업면허(2 및 3에 규정하는 주류소매업면허에 준한다)를 말한다.

2 대형점포주류소매업 면허

대형점포주류소매업 면허란 백화점 또는 기타의 소형소매점포(이하 이것을「대형점포」라 말한다)에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주류소매업면허를 말한다.

(주)1 백화점이란 대규모 소매점포에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소화48년 법률 제 109호 이하 「대점법」이라 말한다) 제 2조 제 2항 [정의]로 규정하는 대규모 소매점포로 일본백화점 협회에 가맹해 있는 점포를 말한다.

2 기타의 대형소매점포란 대점법 제 2조 제 2항 [정의]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포로 점포면적(주요점포에 속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다른 점포의 점포면적으로 포함한다)이 10,000m² 이상의 점포(백화점을 제한다)을 말한다.

3 특수주류소매업면허

특수주류소매업면허란 주류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들의 특별한 필요에 응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인정되어진 다음의 주류소매업면허를 말한다.

- (1) 관광지등 주류소매업면허
- (2) 선반내등 주류소매업면허
- (3) 역구내등 주류소매업면허
- (4) 경기장등 주류소매업면허
- (5) 선용품취급업자 주류소매업면허
- (6) 통신판매 주류소매업면허
- (7) 기한촌 주류소매업면허
- (8) 기타 특수 주류소매업면허

제 3 일반주류소매업면허

일반주류소매업면허는 다음에 정해진 것에 의해 부여한다.

1 면허의 요건

일반주류소매업면허의 요건은 신청자에 관한 인적요건(이하 「인적요건」이라 말한다.) 신청판매장에 관한 장소적 요건(이하 「장소적요건」이라 한다) 및 주류의 수급조정상의 요건(이하 「수급조정상의 요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인적 요건(생략)
- (2) 장소적 요건
 - ① 신청판매장과 기존의 일반주류 소매판매장(휴업장을 제한다)과의 거리는 대원칙으로 신청판매

장 소재지의 소매판매지역으로 정해진 다음의 기준이상으로 할 것.

A지역 100m (인구 30만인 이상의 도시의 국세국장이 지정하는 주요 역에서 500m 이내에 있고,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50m로 한다)

B지역 100m

C지역 150m

(주) 1 그 거리기준은 주류 수급조정을 위해 판단 기준으로서 정해진 것도 있지만 해당 소매판매지역에서 주류 수급관계의 실정에 의해 반드시 여기에서 정해진 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이 기준거리를 20% 정도 해도 별 지장이 없다.

2 단지의 조성, 고층주택의 건설, 기타 현저하게 인구 증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실정에 의해 이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다.

3 기존의 판매장부터 신청판매장까지의 거리의 측정에 대해서는 주로 사람과 차가 왕래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할 것.

4 상업지역이란 도시설계법 (소화43년 법률 제 100호) 제 8조에 규정하는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신청판매장이 주류 제조장, 주류 판매장 또는 주류, 요리점 등과 동일의 장소로 하지 말 것.

(3) 수급조정상의 요건 (생략)

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 (초)

(평성원년 11월 22일 제정)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등에 관한 법률 (소화 28년 법률 제 7호) 제 86조의 6 제 1항의 규정에 기초해 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평성 2년 4월 1일에 주류판매업자가 소지하는 주류의 자동판매기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기준해 고시한다.

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표시)

1 주류자동판매기에는 다음의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각각 당해 각 호로 포함된 것에 의해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57 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되고 띄어 쓴 고딕체 일본문자로 해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 되어있다」 표시한다.

(2) 관리책임자의 성명, 연락선의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20 포인트 활자 이상 크기의 통일되고 띄어 쓴 일본문자로 한다.

(3) 판매정지시간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42 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의 통일되고 띄어 쓴 고딕체의 일본문자로 해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판매를 정지하고 있다」 표시한다.

2 전항에 포함된 사항은 자동판매기 전면 잘 보이는 장소에 야밤에도 판독할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한다.

『주류자동판매기에 관한 취급지침』의 제정에 관해서 (평성 7년 7월 28일 제정)

표제의 것에 대해서는 별지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자 고지가 필요하다.

(이유)

평성 6년 10월 17일의 중앙주류심의회 보고 「알콜음료로서의 주류 판매등의 방향에 대해서 (중간보고)」 및 평성 7년 3월 31일의 각의결정 「규제완화 추진기구에 대해서」을 앞서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 판매에 취급지침을 정해 주류업자등에 대해 적정한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별지 1〉

주류자동판매기에 관한 취급지침

주류 자동판매기는 소비자 이용 편의에의 기여 및 소매 판매점의 경영 합리화, 생략화 등을 배경으로 보급해왔지만 만취성이 있는 주류 판매에 있어서는 종래부터 미성년자 음주방지등을 배려하는 것이 강구되어져 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적합한 판매가 행하여지게 노력해 온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상품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구입자를 확인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현행 주류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에 관해서는 구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된다. 평성 6년 10월 17일의 중앙주류심의회보고 「알콜음료로서의 주류 판매의 방향에 관해서 (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라고 말한다)에 있는 현행 주류자동판매기를 철폐하는 방향에 면허가 있는 등의 제언이 행해지고 있다. 평성 7년 3월 31일의 각의결정 「규제완화추진기구에 관해서」에 있어서도 현행 주류자동판매기의 철폐를 포함한 주류의 판매방법등에 관해서 개선을 강구하는 것과 이것을 앞서 금후 주류자동판매기의 취급에 관해서는 하기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행 주류자동판매기에 관해서는 미성년자가 청량음료로 오인해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적절한 제품설치를 강구하기 위해 주류업자들을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1 현행 주류자동판매기에 관해서는 금후 5년간 목표로 순차 철폐를 지도한다.
- 2 새롭게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량 자동판매기 이외는 설치하지 않게 지도한다.
(주) 1 지도의 대상이 된 자동판매기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판매장에 설치하는 주류 자동판매기 (주류판매장 점포내에 설치된 구입자가 점포외부터 이용할 수 없이 상시면허자도 그 사용인 등이 구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미성년자에 의한 주류구입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진 것을 제한다)로 한다.

2 개량자동판매기란 중간보고에 있어 예시된 現 전국 소매주관조합중앙회에서 개발, 도입이 면허되어 있는 대면판매 (또는 대면 교부)한 자기카드에 의해 개량이 되어 미성년자에 의한 주류의 구입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진 자동판매기 (현행의 주류자동판매기에 카드 읽는 처리장치등을 장착한 것에 대해서도 동사양의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시킨다)을 말한다.

〈별지 2〉

주류자동판매기등에 관한 지도요령

제 1 대상이 되는 주류자동판매기

지도 대상이 되는 주류자동판매기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판매장에 설치한 주류자동판매기 (주류판매장의 점포내에 설치되어, 구입자가 점포외부터 이용할 수 없는 주류자동판매기이거나, 상시면허자 또는 그 사용인등이 구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미성년자에 의한 주류의 구입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진 것을 제한다 (이하 「주류자동판매기」라 말한다))로 한다.

제 2 주류판매업자등에 대한 지도

1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지도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있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주류판매업자가 새로이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병설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2의 (1)에 준하게 지도한다.

(1) 판매시간

주류를 자동판매기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소매업에 있어 주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소화 55년 4월 3일 공정취인위원회 고시등 7호) 제 4조제 3항에 정해진 판매시간 (오전 5시부

터 오후 11시까지)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2) 주의표시등

주류자동판매기에는「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평성원년 11월 22일 국세청고시 제 9호)의 1에 정해진 미성년자음주금지의 주의표시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도한다.

(3) 설치장소

주류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점포내부터 구입자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별칙 「주류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의 지도기준」(이하 「지도기준」라고 말한다)에 설치하는 것 및 청량음료등의 자동판매기를 포함 자동판매기가 도로법(소화 27년 법률 180호)등의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게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지도하고, 지도기준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인정되어진 장소에 설치되어지는 주류자동판매기 및 도로법등에 위반해 설치되어있는 자동판매기에 관해서는 이전설치 또는 철거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한다.

(4) 현행주류자동판매기의 취급 등

현행의 주류자동판매기에 관해서는 평성 7년 5월 18일에 개정된 전국소매주관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말한다)의 통상총회에 있어 평성 12년 5월 31일 까지로 철폐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동 결정이 평성 6년 10월 17일의 중앙주류심의회보고 「알콜음료로서의 주류의 판매등의 재방에 관해서(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라고 말한다)에 속해 있는 것에 관해 현행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평성 12년 5월 31일까지로 순차 철폐하고 동년 6월 1일 이후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지철폐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주류자동판매기의 신규구입 또는 매매등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에 있어 예시된 現 중앙회등에서 개발, 도입이 검토되어 있는 대면판매(또는 대면교부)한 자기카드에 의한 개량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의 구입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자동판매기(현행의 주류자동판매기에 카드 읽기처리장치를 장착한 것에 의해 동사양의 기능은 있는 것으로 인정, 포함한다. 이하 「개량자동판매기」라고 말한다) 이외의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게 지도한다.

미성년자가 청량음료로 오인해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류자동판매기에 식별표시(주류자동판매기로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한 표시를 말한다)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동 중앙회에서 그 표시방법의 기재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주류판매업자가 그 결과를 앞서서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지도한다.

2 신규면허 교부자등에 대한 지도

(1) 면허를 교부하는 외의 지도

새로이 주류소매업 면허를 교부하는 경우(영업의 일수, 법인성격등에 기준해 면허를 교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류판매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심분지각 하는 것과 함께 미성년자 음주방지에 배려한 주류 판매를 행하기 위해 지도한다.

자동판매기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량자동판매기 이외의 자동판매기는 설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과 함께 판매시간, 주의표시 및 설치장소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① 신청자가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1) 주류의 자동판매기는 개량자동판매기이외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 지도하고 소화 53년 6월 17일부 간주 1-25 「주세법 기본 통달의 전부 개정에 관해서」통달의 별책 「주세법기본 통달」의 제 7조의 제 1항 관계의 3(「제조장의 소재지」의 의의)의 규정에 기준해 반드시 판매장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개량자동판매기가 개발된 후에 주류소매업면허를 첨부한 경우에 대해 신청자가 당해 개량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에 관해서도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또 판매시간, 주의표시 등 및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1의 (1)부터 (3)에 기준해 지도를 한다.

(ㄴ) 면허교부 후 개량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또는 설치장소에 이동이 발생할경우에는 이동 후 판매장의 위치 및 주류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를 표시한 대면을 교부해서「이동신고서」에 의해 신고하게 지도한다.

② 신청자가 당해 신청판매장에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주류소매업면허를 부여할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판매장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아직 신청자가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주) 확인서에는 「당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의 판매는 행하지 않는다. 새로이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출」 기재된 것으로 한다. 그 후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개량자동판매기 이외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 및 주류판매장의 위치 및 주류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서 「이동신고서」에 의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지도한다.

(2) 주류판매장의 이전을 면허하는 경우의 지도
주류판매장의 이전을 면허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① 신청자가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

시간, 주의표시 등에 관해서 1의 (1)부터 (4)에 기준한 지도를 하는 것과 함께 주류판매장의 위치 및 주류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표시등에 관해 (1)의 ②에 기준한 지도를 한다.

② 신청자가 당해 신청판매장에 주류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①의 (ㄴ)에 기준한 지도를 행한다.

제 3 주류제조업자등에 대한 지도 등

1 주류제조업자에 대한 지도

주류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주류판매업자에의 현행 주류자동판매기의 시행, 대책등은 행하지 않게 지도한다.

2 주류자동판매기 제조업자에 대한 협력 의뢰

주류자동판매기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및 규제완화추진계획의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하고 개량자동판매기의 개발의 추진에 관해 협력을 의뢰한다. 또 현행의 주류자동판매기에 관해서는 주류제조사, 주류 판매업자등의 요구가 있어도 설치하지 않게 의뢰한다.

제 4 지도방식

지도에 즈음해서는 행정수총법 (평성 5년 법률 제 88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개량지도의 책임자

국세국에서 행하는 행정 지도의 책임자는 국세국장으로서 세무서에서 행하는 행정지도의 책임자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2 취지등의 명시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책임자를 당해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서면교부 등

구두에서 행한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부터 서면의 교부를 구해진 경우에는 지도요령의 내용을 교

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 행한다.

아직 주류업조합을 통해 연합조합원에 대한 지도를 구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행정지도를 원칙으로 해서 면교부의 방법을 취한다.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의 해설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제정의 경위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은 대정 11년 3월에 법률 제 20호로서 제정되어 동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제 1조 이하 4조로 구성된 제 1조 [미성년자 음주 금지, 친권자, 영업자의 의무]가 재판기에 의한 영업에 관한 예문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의 금지

·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동법의 제 1조에 의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음주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의 금지

동조에 의해 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벌칙규정

· 미성년자에 대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미성년자에 대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현재의 과태료는 만엔 미만으로 되어 있다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대정 11년 3월 30일 제정)

(미성년자 음주 금지, 친권자, 영업자의 의무)

제 1조 만 20세에 되지 않은 자는 주류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하는 자 혹은 친권자에 대해 그것을 감독하는 자는 미성년자의 음주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로서 기타의 업태상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의 음용을 제외하는

것을 알리고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주류 및 기구의 처분)

제 2조 만 20세가 안된 자가 기타 음용에 이용할 목적으로써 소유 또는 휴대한 주류 및 기타의 기구는 행정의 처분으로써 그것을 몰수 또는 폐업 등의 기타 필요한 처분을 강구할 수 있다.

(벌칙)

제 3조 제 1조 제 2항,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영업자의 책임)

제 4조 영업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된 때는 본법에 의해 적용해야 할 벌칙은 그것을 법정대리인에 적용한 당시 영업에 관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이 없다.

② 영업자는 기타 대리인, 동거인, 고용인등의 기타의 종업원으로 해서 업무에 관한 본법을 위반할 때는 자기의 지휘에 준한 것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③ 명치 33년 법률 제 52호는 본법에 의해 범죄적용을 준용한다.